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3호 2020. 4. 3. (금)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70호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3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380호 정선군 군계획시설[(도로(예정도로 포함)] 실효에 따른 안내 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20-381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27
- 정선군 공고 제2020-386호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30
- 정선군 공고 제2020-389호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주민 공청회 개최 안내 공고.....31

- 정선군 공고 제2020-396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 재공람·공고.....32
- 정선군 공고 제2020-398호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33
- 정선군 공고 제2020-404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40
- 정선군 공고 제2020-416호 정선군 공영버스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48
- 정선군 공고 제2020-426호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52
- 정선군 공고 제2020-444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86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3호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11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4. 03.)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0호

##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교육 사업
2.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여부 결정 시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취소·실적보고·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제260회 정선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우리 군으로 이송된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1조, 제2조)
- 향교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사업 (제3조, 제4조)
  - 전통문화 계승·교육 사업
  -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 사업비 지원신청 및 준용 (제5조, 제6조)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380호

정선군 군계획시설[(도로(예정도로 포함)] 실효에 따른 안내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등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시설[(도로(예정도로 포함))]의 변경, 폐지, 실효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정 선 군 수

- 1. 목 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제1항에 의거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 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잃음에 따라 정선군 일원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 폐지, 실효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미적용)
- 2. 위 치 : 정선군 9개읍면 일원
- 3. 대상시설 : 붙임 1 참조
- 4. 안 내 문 : 붙임 2 참조
-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선군 군계획시설[(도로(예정도로 포함)] 변경, 폐지, 실효 대상 목록

□ 정선읍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0~33	주간선도로	3,466	북실리 구역계 산122-4도	애산리 구역계 666-1전	일반도로	정선여객터미널	건고제313호 (73.7.25)	
변경	중로	1	2	10.5~33	주간선도로	3,466	북실리 구역계 산122-4도	애산리 구역계 666-1전	일반도로	정선여객터미널	건고제313호 (73.7.25)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460	중로 2-3 봉양리 319-1도	소로 2-35 봉양리 138-2제	일반도로	정선군축협	건고제313호 (73.7.25)	
변경	중로	2	1	12~15	보조간선도로	460	중로 2-3 봉양리 319-1도	소로 1-20 봉양리 361-1제	일반도로	정선군축협	건고제313호 (73.7.25)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도로	1,148	중로 1-2 봉양리 713-2도	중로 2-3 봉양리 375-4도	일반도로	읍사무소	건고제313호 (73.7.25)	
변경	중로	2	2	12~15	보조간선도로	1,148	중로 1-2 봉양리 713-2도	중로 2-3 봉양리 375-4도	일반도로	읍사무소	건고제313호 (73.7.25)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94	중로 1-2 북실리 750-3전	중로 3-7 북실리 718-2제	일반도로	환민아파트	강고15호 (92.2.13)	
변경	중로	2	5	15	집산도로	200	중로 1-2 북실리 750-3전	소로 2-43 북실리 718-2제	일반도로	-	강고15호 (92.2.13)	
기정	중로	2	8	15	보조간선도로	465	소로 1-20 봉양리361-1제	소로 1-3 애산리550-4제	일반도로	-	정고제36호 (19.02.28)	
변경	중로	2	8	15	보조간선도로	465	소로 1-20 봉양리361-1제	소로 1-3 애산리550-4제	일반도로	-	정고제36호 (19.02.28)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1,043	중로 1-2 북실리 산3-1임	중로 1-2 북실리 791-6도	일반도로	정선정보공업고교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중로	3	2	8~12	보조간선도로	1,043	중로 1-2 북실리 산3-15임	중로 1-2 북실리 792-8도	일반도로	정선정보공업고교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92	애산리 준공업지역계 436철	중로 1-1 봉양리 47-54전	일반도로	금광아파트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중로	3	5	12	집산도로	243	중로 3-1 애산리 444-8전	중로 1-1 봉양리 47-54도	일반도로	금광아파트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중로	3	9	12	보조간선도로	191	소로 1-3 애산리550-7대	중로1-3 애산리539-4도	일반도로	-	정선고제36호 (19.2.28)	
변경	중로	3	9	12	보조간선도로	202	중로 2-8 애산리550-4제	중로1-3 애산리535-2대	일반도로	-	정선고제36호 (19.2.28)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50	중로 2-2 봉양리 348-6대	중로 2-3 봉양리 374-4도	일반도로	농협판매장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1	1	10	집산도로	50	중로 1-1 애산리 415-147도	소로 2-1 애산리 432-389대	일반도로	농협판매장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164	2호광장 봉양리 57-1도	중로 1-3 봉양리 75-8장	일반도로	대지철물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1	2	10	집산도로	164	2호광장 봉양리 57-1도	중로 1-3 봉양리 75-8도	일반도로	대지철물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966	소로 1-5	중로 1-3 애산리 605-8도	일반도로	-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1	3	10	집산도로	381	소로 1-5 봉양리 65-4도	소로 1-17 봉양리 919-27 장	일반도로	-	강고제15호 (92.2.1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138	중로 1-3 봉양리 77-6대	소로 1-10 애산리 467-1도	일반 도로	국토관리 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1	4	10	집산 도로	75	중로 1-3 봉양리 72-4도	애산리 432-353대	일반 도로	국토관리 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1	6	10	집산 도로	152	중로 2-2 봉양리 348-6대	중로 2-3 봉양리 374-4도	일반 도로	농협 판매장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1	6	10	집산 도로	152	중로 2-2 봉양리 348-6대	중로 2-3 봉양리 374-4도	일반 도로	농협 판매장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1	7	10	집산 도로	95	중로 2-2 봉양리 218-1대	소로 3-22 봉양리 258대	일반 도로	읍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1	7	7~10	집산 도로	95	중로 2-2 봉양리 218-4도	소로 3-22 봉양리 215-1대	일반 도로	읍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1	10	10	집산 도로	646	중로 3-1 애산리 432-426대	중로 1-3 애산리 467-1도	일반 도로	생약 총판장	강고제98호 (03.4.28)	
변경	소로	1	10	10	집산 도로	680	중로 3-1 애산리 432-426대	중로 1-3 애산리 467-1도	일반 도로	생약 총판장	강고제98호 (03.4.28)	
기정	소로	1	11	10	집산 도로	379	중로 3-8 북실리 623전	소로 2-27 북실리 634-1전	일반 도로	북실2리 노인정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1	11	10	집산 도로	116	중로 3-8 북실리 623-6도	북실리 647-3대	일반 도로	북실2리 노인정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64	중로 1-1 봉양리 46-31대	소로 2-2 봉양리 42-6전	일반 도로	-	강고제34호 (85.12.14)	
변경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64	중로 1-1 봉양리 46-31도	소로 3-55 봉양리 42-11전	일반 도로	-	강고제34호 (85.12.14)	
기정	소로	1	17	10	집산 도로	213	중로 1-3 애산리 432-340대	소로 1-3 봉양리 919-24천	일반 도로	봉양주공 아파트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1	17	10	집산 도로	213	중로 1-3 애산리 432-340대	소로 1-3 봉양리 919-24천	일반 도로	봉양주공 아파트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99	중로 1-1 애산리 415-106전	소로 1-12 봉양리 46-3대	일반 도로	봉양 초등학교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316	중로 1-1 애산리 415-106전	소로 3-4 봉양리 1-131대	일반 도로	봉양 초등학교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82	중로 1-1 애산리 415-91임	중로 2-3 봉양리 60-2도	일반 도로	조양강변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982	중로 1-1 애산리 415-163제	중로 2-3 봉양리 60-2도	일반 도로	조양강변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50	중로 1-1 애산리 432-1대	소로 2-1 봉양리 1-28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48	중로 1-1 애산리 432-1대	소로 2-1 봉양리 1-28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18	중로 1-1 애산리 432-1대	중로 3-1 애산리 426-2전	일반 도로	소로2-3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70	중로 1-1 애산리 432-1대	소로 2-3 애산리 416-39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381	소로 1-4 애산리 432-306대	소로 2-8 애산리 432-218대	일반 도로	국토관리 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50	소로 3-11 애산리 432-426대	소로 3-12 애산리 432-456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18	중로 2-6 애산리 432-38대	소로 1-3 애산리 592-11제	일반 도로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정선고제41호 (03.5.9)	
변경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56	중로 1-3 애산리 432-38도	애산리 592-11제	일반 도로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정선고제41호 (03.5.9)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18	중로 2-6 애산리 432-38대	소로 2-39 애산리 525-1전	일반 도로	영신택시	정선고제41호 (03.5.9)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79	중로 1-3 애산리 432-507도	소로 2-14 애산리 592-8대	일반 도로	영신택시	정선고제41호 (03.5.9)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84	중로 2-1 봉양리 139-1도	중로 2-2 봉양리 337-14대	일반 도로	농촌 지도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86	중로 2-1 봉양리 139-1도	중로 2-2 봉양리 335-7대	일반 도로	농촌 지도소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07	중로 2-2 봉양리 330-8대	중로 2-1 봉양리 147-8전	일반 도로	정선 중고교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08	중로 2-2 봉양리 330-1도	중로 2-1 봉양리 139-1도	일반 도로	정선 중고교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89	중로 2-2 봉양리 230-10대	소로 2-35 봉양리 167제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91	중로 2-2 봉양리 230-1도	소로 1-20 봉양리 167제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198	중3-2 북실리 617-17대	소2-27 북실리 637전	일반 도로	안식일 교회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2	26	8	국지 도로	40	중로 3-2 북실리 617-24도	소로 2-25 북실리 617-22도	일반 도로	안식일 교회	강고제15호 (92.2.13)	
폐지	소로	2	27	8	국지 도로	391	중로 3-8 북실리 623전	소로 2-25 북실리 629-1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폐지	소로	2	28	8	국지 도로	145	소로 2-27 북실리 634-1전	소로 2-25 북실리 628-9전	일반 도로	아리랑 아파트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142	중로 3-2 북실리 616-2도	소로 2-29 북실리 618-8전	일반 도로	용담주택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30	8	국지 도로	63	중로 3-2 북실리 616-15전	주차장13 북실리 616-5전	일반 도로	용담주택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61	소로 2-29 북실리 618전	소로 3-31 북실리 764-7전	일반 도로	북실공원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17	소로 3-43 북실리 829-8구	소로 3-31 북실리 764-7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56	중로3-9 애산리531전	소로 2-39 애산리530-2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56	중로3-9 애산리531전	애산리 530-2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폐지	소로	2	39	8	국지 도로	203	중로 2-6 애산리 518-1전	소로 2-14 애산리 592-8천	일반 도로	약초시장	강고제15호 (92.2.13)	
폐지	소로	2	40	8	국지 도로	102	소로 2-27 북실리 637전	소로 1-11 북실리 643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246	중로 2-6 애산리 579-2대	애산리 597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2	42	6~8	국지 도로	246	중로 1-3 애산리 579-2대	애산리 659-3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720	중로 1-2 북실리 708-2도	중로 1-2 북실리 829-2제	일반 도로	조양강변	강고제134호 (98.7.11)	
변경	소로	2	43	8	집산 도로	516	북실리 718-6제	중로 1-2 북실리 829-2제	일반 도로	조양강변	강고제134호 (98.7.11)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8	중로 1-1 애산리 415-110전	소로 2-2 봉양리 919-2제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91	중로 1-1 애산리 415-110전	소로 2-2 봉양리 919-2제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51	중로 1-1 봉양리 46-13전	소로 2-1 봉양리 1-39전	일반 도로	나질원 어린이집	정선고제41호 (03.5.9)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51	중로 1-1 봉양리 46-13전	소로 2-1 봉양리 1-39전	일반 도로	나질원 어린이집	정선고제41호 (03.5.9)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2	중로 2-3 봉양리 69-3전	중로 3-5 봉양리 46-37대	일반 도로	감리교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99	소로 3-33 봉양리 33-17전	소로 1-12 봉양리 46-31도	일반 도로	감리교회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41	중로 1-1 봉양리 47-61도	소로 2-2 봉양리 37-7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8	6	국지 도로	141	중로 1-1 봉양리 47-61도	봉양리 37-39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55	중로 1-1 봉양리 48-13대	소로 2-11 애산리 432-180대	일반 도로	제일교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256	중로 1-1 봉양리 48-13도	소로 2-11 애산리 432-420대	일반 도로	제일교회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428	중로 1-1 애산리 415-91임	애산리 구역계 산43-2임	일반 도로	-	정선고제41호 (03.5.9)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450	소로 2-2 애산리 415-163제	애산리 구역계 산43-2철	일반 도로	-	정선고제41호 (03.5.9)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369	소로 1-4 봉양리 78-11전	소로 1-10 애산리 467-1도	일반 도로	국토관리 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11	4~6	국지 도로	215	봉양리 54-56대	소로 2-11 애산리 432-420대	일반 도로	국토관리 사무소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323	중로 2-3 봉양리 301-21도	중로 3-3 봉양리 405-2대	일반 도로	교육청 별관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14	5~6	국지 도로	319	중로 2-3 봉양리 301-21도	중로 3-3 봉양리 313-6도	일반 도로	교육청 별관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9	소로 2-1 애산리 432-45대	소로 3-1 애산리 432-16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9	소로 2-1 애산리 432-45대	소로 3-1 애산리 432-37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72	중로 3-5 애산리 436철	중로 3-1 애산리 448-9대	일반 도로	정선선	정선고제41호 (03.5.9)	
변경	소로	3	24	6~8	국지 도로	365	애산리 436철	중로 3-1 애산리 448-9대	일반 도로	정선선	정선고제41호 (03.5.9)	
기정	소로	3	29	6	국지 도로	53	소로 1-2 봉양리 56-1전	소로 3-11 봉양리 54-13도	일반 도로	미라정 가든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29	5~6	국지 도로	53	소로 1-2 봉양리 56-1전	소로 3-11 봉양리 54-13도	일반 도로	미라정 가든	강고제134호 (85.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211	중로 3-2 북실리 765-19학	2호완충녹지 북실리 762-4전	일반 도로	정선 실업고교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3	31	7~8	국지 도로	211	중로 3-2 북실리 765-19학	2호완충녹지 북실리 762-4전	일반 도로	정선 실업고교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54	중로 1-1 봉양리 48-11대	소로 2-2 봉양리 34-60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33	6	국지 도로	52	중로 1-1 봉양리 48-11대	소로 3-1 봉양리 34-60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27	소로 2-1 봉양리 1-109잡	소로 2-2 봉양리 2-2제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27	소로 2-1 봉양리 1-109도	소로 2-2 봉양리 2-2제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380	중로 3-2 북실리 785-7도	중로 3-2 북실리 781-1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변경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59	북실리 601-29도	중로 3-2 북실리 781-1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85.12.14)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67	중로 2-2 봉양리 339-3대	소로 3-17 봉양리 357-14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28호 (10.07.23.)	
변경	소로	3	37	6	국지 도로	69	중로 2-2 봉양리 339-20대	소로 3-17 봉양리 357-2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28호 (10.07.23.)	
폐지	소로	3	39	4	국지 도로	61	중로 2-7 애산리 599-18전	소로 3-42 애산리 599-23전	일반 도로	-	강고제134호 (98.7.11)	
기정	소로	3	40	6	국지 도로	113	중로 3-8 북실리 621전	소로 2-26 북실리 627-1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3	40	6	국지 도로	67	중로 3-8 북실리 621-5도	북실리 627-21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70	소로 3-54 애산리 599-30대	소로 3-39 애산리 599-8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3	42	6	국지 도로	77	소로 2-9 애산리 599-50대	애산리 599-22철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3	43	6	국지 도로	136	소로 2-31 북실리 829-6제	소로 3-31 북실리 762-4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변경	소로	3	43	6	국지 도로	136	소로 2-31 북실리 829-6제	소로 3-31 북실리 762-4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92.2.13)	
기정	소로	3	49	6	국지 도로	73	소로 3-9 봉양리 53-29전	소로 3-11 봉양리 55-37전	일반 도로	-	정선고제25호 (16.4.15.)	
변경	소로	3	49	6	국지 도로	74	소로 3-9 봉양리 53-29전	소로 3-11 봉양리 55-37전	일반 도로	-	정선고제25호 (16.4.15.)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08	중로 1-2 북실리 756-13	중로 3-7 북실리 735-1	일반 도로	-	강고제150호 (16.4.29.)	
변경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12	중로 1-2 북실리 756-14도	소로 2-43 북실리 829-5제	일반 도로	-	강고제150호 (16.4.29.)	

## □ 고한·사북읍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 선도로	460	6호 광장 고한리 39-141도	8호 광장 고한리 44-8도	일반 도로	갈래교	건고제294호 (73.7.12)	
변경	중로	2	6	10.5~ 15	보조간 선도로	460	6호 광장 고한리 39-141도	8호 광장 고한리 44-8도	일반 도로	갈래교	건고제294호 (73.7.12)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 선도로	1,953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제294호 (73.7.12)	
변경	중로	2	7	8~19	보조간 선도로	1,953	8호 광장 고한리 274-183도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제294호 (73.7.12)	
기정	중로	2	9	15	보조간 선도로	462	중로 3-1 사북리 산53-12입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제74호 (91.6.18)	
변경	중로	2	9	13~15	보조간 선도로	462	중로 3-1 사북리 산53-12입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제74호 (91.6.18)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 선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제194호 (76.12.7)	
변경	중로	3	2	7~12	보조간 선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제194호 (76.12.7)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28	중로 3-2 사북리 377-7첼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강고제26호 (79.2.8)	
변경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32	중로 3-2 사북리 377-7첼	소로 1-3 사북리 452-81대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강고제26호 (79.2.8)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제194호 (76.12.7)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제194호 (76.12.7)	
기정	중로	3	8	12	보조간 선도로	724	8호 광장 고한리 47-1도	소로 1-12 고한리 74-8도	일반 도로	고한초교	건고제294호 (73.7.12)	
변경	중로	3	8	12	보조간 선도로	582	8호 광장 고한리 47-1도	소로1-11 고한리 산20-11입	일반 도로		건고제294호 (73.7.12)	
기정	중로	3	12	13	국지 도로	57	소로 1-4 사북리 356-241도	중로 2-4 사북리 356-6도	일반 도로	호텔인	강고제26호 (79.2.8)	
변경	중로	3	12	9~13	국지 도로	57	소로 1-4 사북리 356-241도	중로 2-4 사북리 356-6도	일반 도로	호텔인	강고제26호 (79.2.8)	
기정	중로	3	15	12	보조간 선 도로	874	고한구역계 고한리 산216-1입	중로 2-1 고한리 373-2대	일반 도로	정암 광업소	건고제294호 (73.7.12)	
변경	중로	3	15	10~ 12	보조간 선 도로	893	고한구역계 고한리 산216-1입	중로 2-1 고한리 373-2대	일반 도로	정암 광업소	건고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576	중로 2-7 고한리 274-6대	소로 1-18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1	2	9~10	집산 도로	409	고한리 136-29도	소로 1-18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시장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1	3	6~10	국지 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시장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1	11	10~ 15	국지 도로	1,565	중로 3-8 고한리 산260-7입	중로 2-7 고한리 120-88대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강고제257호 (73.12.26)	
변경	소로	1	11	10~ 15	국지 도로	723	중로 3-8 고한리 산260-7도	학교7 고한리 산2-6입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강고제257호 (73.12.26)	
변경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9	중로 3-8 고한리 120-92도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	강고제257호 (73.12.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89	중로 2-7 고한리 62-9철	중로 3-8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1	12	6~10	국지 도로	100	중로 2-7 고한리 62-6도	학교7 고한리 74학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753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입	소로 1-18 고한리 140-6대	일반 도로	고한 남부교회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25	대로 3-2 고한리 121-24도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입	일반 도로		강고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	중로 3-9 사북리 300-13대	소로 3-1 사북리 299-1도	일반 도로	선명2차 APT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2	1	7~8	국지 도로	15	중로 3-9 사북리 300-13대	소로 3-1 사북리 299-1도	일반 도로	선명2차 APT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1	중로 3-2 사북리 317-181대	소로 3-39 사북리 317-119전	일반 도로	사북 전화국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37	중로 3-2 사북리 317-181대	사북리 317-259대	일반 도로	사북 전화국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9	중로 3-1 사북리 산53-11입	중로 3-2 사북리 369-17대	일반 도로	사북역전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48	중로 2-9 사북리 374-5도	중로 3-2 사북리 369-115도	일반 도로	사북역전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847	중로 3-6 고한리 산1-145입	고한구역계 고한리 16-1전	일반 도로	삼봉 APT	강고제135호 (85.12.14)	
변경	소로	2	11	7.5~8	국지 도로	847	중로 3-6 고한리 산1-145입	고한구역계 고한리 16-1전	일반 도로	삼봉 APT	강고제135호 (85.12.14)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314	중로 3-6 고한리 산1-10철	소로 3-12 고한리 36-44대	일반 도로	중앙 APT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2	12	7~8	국지 도로	318	중로 3-6 고한리 산1-10철	고한리 36-65대	일반 도로	중앙 APT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35	소로 1-11 고한리 80-36입	고한리 80-31입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정선고제96호 (10.7.09)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35	소로 1-11 고한리 80-36입	고한리 80-31입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정선고제96호 (10.7.09)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97	소로 1-12 고한리 62-218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제300호 (03.12.13)	
변경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97	소로 1-12 고한리 96-60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제300호 (03.12.13)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95	소로 1-12 고한리 62-169대	소로 2-26 고한리 88-1대	일반 도로	고한 우체국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2	25	5~8	국지 도로	195	소로 1-12 고한리 96-60도	소로 2-26 고한리 88-1도	일반 도로	고한 우체국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48	중로 2-7 고한리 94-23대	소로 2-25 고한리 91-21대	일반 도로	제일 감리교회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2	26	8	국지 도로	48	중로 2-7 고한리 94-8도	소로 2-25 고한리 91-21도	일반 도로	제일 감리교회	강고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1-13 고한리 산297-57입	중로 2-7 고한리 274-276입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1-13 고한리 산297-57도	중로 2-7 고한리 274-276도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제2577호 (73.12.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365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3도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2	53	6~8	국지 도로	362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3도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34	소로 2-1 사북리 299-1도	사북APT 사북리 303대	일반 도로	사북 APT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91	소로 2-1 사북리 299-1도	사북APT 사북리 303대	일반 도로	사북 APT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20	중로 2-3 사북리 273-3도	중로 2-3 사북리 452천	일반 도로	대림 APT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3	6	5~6	국지 도로	141	사북리 282대	중로 2-3 사북리 산72-11도	일반 도로	대림 APT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2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고한주거지역계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	정선고제29호 (02.5.16)	
변경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5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리 274-299천	일반 도로	-	정선고제29호 (02.5.16)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54	소로 2-23 고한리 97-24대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3	31	5~6	국지 도로	54	소로 2-23 고한리 97-10도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	강고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3	33	6~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167도	일반 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제26호 (79.2.8)	
변경	소로	3	33	6~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252도	일반 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제26호 (79.2.8)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67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2-53 사북리 344-169대	일반 도로	-	정선고제25호 (16.4.15.)	
변경	소로	3	34	6	국지 도로	68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2-53 사북리 344-169대	일반 도로	-	정선고제25호 (16.4.15.)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62	중로 3-2 사북리 317-266대	소로 2-53 사북리 313-47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16호(16.3.4)	
변경	소로	3	38	6	국지 도로	63	중로 3-2 사북리 317-266대	소로 2-53 사북리 313-47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16호(16.3.4)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37	소로 2-24 고한리 97-35대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3	40	4~6	국지 도로	142	소로 2-24 고한리 62-130도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강고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319	중로 2-7 고한리 104-115도	중로 3-14 고한리 91-70도	일반 도로	-	강고제2577호 (73.12.26)	
변경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제2577호 (73.12.26)	

□ 신동읍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 선도로	5,570	중로 2-1 예미리 752-1철	소로 2-8 조동리 2-2도	일반 도로	함백종합 고교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중로	2	2	12~15	보조간 선도로	5,570	광장2 예미리 752-5철	소로 2-8 조동리	일반 도로	함백종합 고교	강고제2652호 (74.4.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 선도로	790	소로 1-3 예미리 668-23대	북측구역계 예미리 309-5도	일반 도로	예미초교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중로	3	1	8~15	보조간 선도로	790	소로 1-3 예미리 668-4도	북측구역계 예미리 309-2도	일반 도로	예미초교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중로	3	3	12 ~18	보조간 선도로	1,883	중로 2-2 조동리 207-2도	소로 1-6 조동리 11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중로	3	3	8 ~18	보조간 선도로	1,123	중로 2-2 조동리 207-2도	소1-8 조동리 136-2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 선도로	770	서측구역계 예미리 787-18도	중로 1-1 예미리 665-3도	일반 도로	농협창고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중로	3	4	8~12	보조간 선도로	696	서측구역계 예미리 787-18도	소로 2-2 예미리 695-9도	일반 도로	농협창고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902	소로 1-3 예미리 737-6도	중로 3-2 예미리 131-1답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1	1	10	집산 도로	658	소로 1-3 예미리 737-6도	소로1-7 예미리 247-2철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510	중로 2-1 예미리 757-4답	중로 2-1 예미리 787-8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1	2	10	집산 도로	228	중로 3-4 예미리 757-3도	예미리 765-1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894	중로 2-1 예미리 779-3도	중로 1-1 예미리 668-13도	일반 도로	예미농협	강고제5호 (77.1.31)	
변경	소로	1	3	6~10	집산 도로	894	중로 3-4 예미리 779-2도	중로 1-1 예미리 658-2도	일반 도로	예미농협	강고제5호 (77.1.31)	
기정	소로	1	4	10	보조간 선도로	538	중로 1-1 예미리 668-24도	서측구역계 예미리 623-9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1	4	6~17	보조간 선도로	538	중로 1-1 예미리 668-24도	서측구역계 예미리 623-9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64	중로 3-2 예미리 249-1답	소로 1-1 예미리 247-1답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64	소로3-28 예미리 248-4전	소로 1-1 예미리 247-4답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344	중로 3-3 조동리 137-1도	준주거경계 조동리 45-26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소로	1	8	10	국지 도로	362	중로 3-3 조동리136-2도	준주거경계 조동리 45-26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03	중로 2-1 예미리 695-19도	소로 1-3 예미리 692-3대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1	중로 3-4 예미리 695-22도	소로 1-3 예미리 692-3대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39	중로 2-1 예미리 757-3도	소로 1-3 예미리 737-7답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71	중로 2-1 예미리 892-5전	소로 3-10 예미리 699-2답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7.09)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173	중로 3-4 예미리 695-22도	소로 3-10 예미리 699-2답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7.09)	
기정	소로	2	8	8	집산 도로	636	중로 2-2 예미리 2-1대	동측구역계 예미리 209-5전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소로	2	8	8	집산 도로	636	중로 2-2 조동리 1-83대	남측구역계 방제리 산87-145임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집산 도로	286	중로 2-2 조동리 1-83대	남측구역계 방제리 산87-145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2	9	8	집산 도로	285	중로 2-2 조동리 1-83대	남측구역계 방제리 산87-145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6	중로 2-2 조동리 195-5대	자연녹지경계 조동리 197-47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2	10	5~8	국지 도로	126	중로 2-2 조동리 195-5대	자연녹지경계 조동리 197-47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50	중로 3-2 예미리 250전	소로 1-1 예미리 247-1답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50	소로 3-28 예미리 250전	소로 1-1 예미리 247-1답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58	중로 3-2 예미리 249-3답	소로 1-7 예미리 892-1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58	소로 3-28 예미리 249-3답	소로 1-7 예미리 892-1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10	중로 3-3 조동리 218-1구	소로 2-17 조동리 150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55	중로 3-3 조동리 140-1도	소로 3-9 조동리 151-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410	소로 1-3 예미리 691-23대	예미리 686-3도	일반 도로	예미1리 경로당	강고제136호 (85.12.14)	
변경	소로	3	1	4	국지 도로	336	어린이공원6 예미리 688대	중로3-1 예미리 284-2도	일반 도로	예미1리 경로당	강고제136호 (85.12.1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65	중로 2-1 예미리 695-19도	중로 2-1 예미리 695-19도	일반 도로	농협창고	정선고제27호 (02.5.16)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73	중로 3-4 예미리 695-9도	중로 3-4 예미리 695-9도	일반 도로	농협창고	정선고제27호 (02.5.16)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260	소로 1-3 예미리 678-3전	중로 3-1 예미리 666-1도	일반 도로	의림천변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3	4	국지 도로	264	소로 1-3 예미리 678-3전	중로 3-1 예미리 666-1도	일반 도로	의림천변	강고제2652호 (74.4.9)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81	소로 1-3 예미리 718-15대	소로 2-2 예미리 692-13대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23	소로 2-17 조동리 147-23대	소로 1-8 조동리 151-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226	소로 3-29 조동리 147-23대	소로 1-8 조동리 151-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341	중로 3-3 조동리 146-1도	4호 체육공원 조동리 2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6호 (85.12.14)	
변경	소로	3	12	5~6	국지 도로	338	중로 3-3 조동리 146-1도	4호 체육공원 조동리 2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136호 (85.12.14)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57	중로 2-2 조동리 206-14대	중로 3-3 조동리 209-3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57	중로 2-2 조동리 206-14대	중로 3-3 조동리 209-3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93	중로 2-2 조동리 197-1도	상업지역경계 조동리 494천	일반 도로	함백 우체국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15	4~6	국지 도로	193	중로 2-2 조동리 197-1도	상업지역경계 조동리 494천	일반 도로	함백 우체국	강고제2652호 (74.4.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42	중로 2-2 조동리 284-22답	주거지역내 조동리 268대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17	4~6	국지 도로	487	중로 2-2 조동리 284-22답	주거지역내 조동리 268대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298	중로 2-2 조동리 301-1도	준공업지역 조동리 307-1도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18	6	국지 도로	125	중로 2-2 조동리 301-1도	조동리 300-25대	일반 도로	-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73	중로 2-2 조동리 12-6전	주거지역경계 조동리 494-5전	일반 도로	새마을 회관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20	4~6	국지 도로	73	중로 2-2 조동리 12-6전	주거지역경계 조동리 494-5전	일반 도로	새마을 회관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48	중로 2-2 조동리 6-129대	5호 어린이공원 조동리 4-1도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소로	3	27	6	국지 도로	48	중로 2-2 조동리 6-129대	5호 어린이공원 조동리 4-1도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88	중로 3-3 조동리 147-8대	조동리 147-32대	일반 도로	-	정선고제25호 (16.4.15.)	
변경	소로	3	28	6	국지 도로	92	중로 3-3 조동리 147-7대	조동리 147-32대	일반 도로	-	정선고제25호 (16.4.15.)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도로	1,148	중로 2-1 예미리 709-3도	중로 2-2 예미리 122-21도	일반 도로	태경산업	강고제2652호 (74.4.9)	
변경	소로	3	29	6	국지 도로	213	소로 1-7 예미리 248-5전	소로 2-15 예미리 248-11전	일반 도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강고제2652호 (74.4.9)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303	중로 3-3 조동리 140-4대	1호 유원지 조동리 162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변경	소로	3	30	6	국지 도로	104	중로 3-3 조동리 140-4대	조동리 147-23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호 (79.1.30)	

□ 증산(남면)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 선도로	1,180	중로 2-1 무릉리 819천	증산역앞 무릉리 608-3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변경	중로	2	2	12~15	보조간 선도로	1,180	중로 2-1 무릉리 819-60천	증산역앞 무릉리 611-14도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 선도로	260	대로 3-1 무릉리 416-18도	중로 2-1 무릉리 439-3전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변경	중로	2	3	15	보조간 선도로	262	대로 3-1 무릉리 416-18도	중로 2-1 무릉리 824도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886	중로 2-1 무릉리 434-3대	중로 2-2 무릉리 616-3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1	1	10	집산 도로	886	중로 2-1 무릉리 434-3대	중로 2-2 무릉리 616-3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05	중로 2-1 무릉리 479-15도	소로 1-1 무릉리 630-12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05	중로 2-1 무릉리 625-1도	소로 1-1 무릉리 630-12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640	소로 1-7 무릉리 498-10답	소로 1-7 무릉리 596-8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2,065	동측구역계 무릉리 518-3구	중로 2-1 무릉리 500-6전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1	7	8~10	국지 도로	2,048	동측구역계 무릉리 518-3구	중로 2-1 무릉리 503-2도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20	중로 2-1 무릉리 442-2전	소로 1-1 무릉리 624-1전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변경	소로	2	4	5~8	국지 도로	220	중로 2-1 무릉리 822-3공	소로 1-1 무릉리 624-20전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12	중로 2-1 무릉리 640-1답	소로 1-1 무릉리 624-6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212	중로 2-1 무릉리 823공	소로 1-1 무릉리 624-6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70	소로 1-1 무릉리 778전	소로 2-5 무릉리 640-1답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52	소로 2-4 무릉리 777-45전	소로 2-5 무릉리 640-1답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60	중로 2-2 무릉리 611-9도	소로 3-5 무릉리 614-52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2	8	6.5~8	국지 도로	160	중로 2-2 무릉리 612도	소로 3-5 무릉리 614-52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32	소로 2-8 무릉리 477-1도	소로 3-7 무릉리 481-7전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132	소로 2-8 무릉리 614-69도	소로 3-7 무릉리 481-14도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00	소로 1-3 무릉리 479-16답	소로 2-5 무릉리 640-36잡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00	소로 1-3 무릉리 625-1도	소로 2-5 무릉리 640-36잡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34	소로 1-7 무릉리 542대	소로 3-19 무릉리 561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34	소로 1-7 무릉리 542-4대	소로 3-19 무릉리 561-2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78	소로 1-3 무릉리 636-33도	소로 2-8 무릉리 638-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78	소로 1-3 무릉리 636-33도	소로 2-8 무릉리 638-38대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25	중로 2-2 무릉리 614-66대	소로 2-9 614-1답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125	중로 2-2 무릉리 614-66도	소로 2-9 614-105대	일반 도로	-	강고제108호 (91.9.6)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46	중로 2-2 무릉리 484-9답	중로 2-1 무릉리 479-8답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146	중로 2-2 무릉리 484-28도	중로 2-1 무릉리 477-18중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70	소로 1-3 무릉리 479-2답	소로 2-9 무릉리 481-3전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70	소로 1-3 무릉리 479-27답	소로 2-9 무릉리 481-19대	일반 도로	-	정선고제28호 (02.5.1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536	소로 1-7 무릉리 819천	소로 1-7 무릉리 527-4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318	소로 2-15 무릉리 556-2전	소로 1-7 무릉리 527-7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106	소로 2-15 무릉리 550대	소로 2-14 무릉리 546-4대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1	소로 1-3 무릉리 630-10도	소로 2-5 무릉리 625-1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3	26	6	국지 도로	101	소로 1-3 무릉리 628-1도	소로 2-5 무릉리 624-11도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5	소로 1-1 무릉리 615-4전	소로 2-8 무릉리 636-1구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변경	소로	3	27	3.5~6.5	국지 도로	45	소로 1-1 무릉리 635-1도	소로 2-8 무릉리 636-1구	일반 도로	-	강고제52호 (87.5.1)	

□ 여량면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412	중로2-1 여량리 99-13대	1근린공원 여량리 375전	일반 도로	여량 중고교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중로	3	1	10~12	집산 도로	255	중로2-1 여량리 99-6도	여량중고교 여량리 88-2도	일반 도로	여량 중고교	강고제43호 (78.2.28)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608	중로 1-1 여량리 372-115전	남측구역계 여량리 390-3도	일반 도로	옥수수 가공공장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중로	3	2	12~14	집산 도로	608	교통광장3 여량리 389-3도	중로2-1 여량리 269-15도	일반 도로	옥수수 가공공장	강고제43호 (78.2.28)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59	중로 2-1 여량리 141-62도	소로 3-7 여량리 141-10전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159	중로 2-1 여량리 123-2도	소로 3-7 여량리 119-9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04	중로2-1 여량리 115-7도	유원지경계 여량리 178-4답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83.4.28)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183	중로 2-1 여량리 269-25도	소로 1-7 여량리 105-16답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1	3	10	집산 도로	123	중로 2-1 여량리 110-1도	소로 1-7 여량리 103-6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06	중로 2-1 여량리 127-14대	소로 1-5 여량리 74-2전	일반 도로	여량 초교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05	중로 2-1 여량리 127-20도	소로 1-5 여량리 60-2전	일반 도로	여량 초교	강고제43호 (78.2.28)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362	중로 3-1 여량리 71전	소로 2-15 여량리 127-12구	일반 도로	여량 초교	강고제63호 (83.4.28)	
변경	소로	1	5	10	집산 도로	228	중로 3-1 여량리 71전	소로 2-15 여량리 127-12구	일반 도로	여량 초교	"	
기정	소로	1	6	10	집산 도로	276	중로 3-1 여량리 102-5도	중로 3-2 여량리 372-132답	일반 도로	-	강고제22호 (97.2.6)	
변경	소로	1	6	10	집산 도로	276	중로 3-1 여량리 103-6도	중로 3-2 여량리 320-1도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집산 도로	285	중로 3-1 여량리 90-3전	중로 3-2 여량리 372-91전	일반 도로	-	정고제43호 (03.5.9)	
변경	소로	1	7	10	집산 도로	285	중로 3-1 여량리 90-3전	중로 3-2 여량리 372-91전	일반 도로	-	정고제43호 (03.5.9)	
기정	소로	1	8	10	집산 도로	104	중로 3-1 여량리 86-2도	소로 1-4 여량리 84-1전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1	8	10	집산 도로	107	중로 3-1 여량리 86-2도	소로 1-4 여량리 94-1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9	중로 2-1 여량리 269-1도	1완충녹지 여량리 252-3답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83.4.28)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54	중로 2-1 여량리 269-1도	소로 2-16 여량리 277-4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40	중로 2-1 여량리 327-2도	유원지경계 여량리 236-2철	일반 도로	-	강고제22호 (97.2.6)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278	중로 2-1 여량리 327-2도	여량리 297-6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77	중로 3-4 여량리 122-4대	중로 3-3 여량리 264-2도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277	중로 3-4 여량리 122-4대	중로 3-3 여량리 264-2도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51	중로 2-1 여량리 269-39대	소로 3-8 여량리 212-1철	일반 도로	여량역	강고제63호 (83.4.28)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48	중로 2-1 여량리 272-7도	소로 2-4 여량리 277-10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24	소로2-6 여량리 149-47전	소로 3-7 여량리 149-21전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83.4.28)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124	소로2-6 여량리 130-12도	여량리 130-12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0	소로 2-13 여량리 166-5전	소로 2-10 여량리 161전	일반 도로	-	강고제100호 (03.4.28)	
변경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0	소로 2-13 여량리 166-5전	여량리 161-1제	일반 도로	-	강고제100호 (03.4.28)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33	중로 2-1 여량리 130-3대	소로 3-7 여량리 154-5도	일반 도로	-	강고63호 (83.4.28)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233	중로 2-1 여량리 149-40도	소로 3-7 여량리 154-5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385	중로 2-1 여량리 326-6전	중로 3-2 여량리 372-53전	일반 도로	-	강고제22호 (97.2.6)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47	중로 2-1 여량리 348-1도	중로 3-2 여량리 372-141답	일반 도로	-	강고제22호 (97.2.6)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47	중로 2-1 여량리 348-1도	중로 3-2 여량리 372-135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304	소로 1-1 여량리 170-1구	소로 2-10 여량리 770-2전	일반 도로	-	강고22호 (97.2.6)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9	소로 1-1 여량리 212-1철	여량리 167-10전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315	중로 2-1 여량리 130-6도	동측구역계 여량리 산7-4도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83.4.28)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330	중로 2-1 여량리 130-6도	동측구역계 여량리 산7-4천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07	중로 3-1 여량리 92-6도	소로 1-4 여량리 94-1도	일반 도로	-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09	중로 3-1 여량리 92-6도	소로 1-4 여량리 94-1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4	6	국지 도로	172	소로 2-1 여량리 252-3답	소로 2-2 여량리 297-6답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23	중로 2-1 여량리 310-5도	소로 2-12 여량리 371-68답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28	중로 2-1 여량리 269-1도	소로 2-12 여량리 371-68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36	중로 2-1 여량리 109-1구	소로 2-11 여량리 371-18답	일반 도로	여량교회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3	6	4~6	국지 도로	278	중로 2-1 여량리 109-1구	중로 3-2 여량리 391-1도	일반 도로	여량교회	강고제43호 (78.2.28)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315	소로 1-1 여량리 172-1전	소로 2-10 여량리 154-3전	일반 도로	-	강고22호 (97.2.6)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108	소로 1-1 여량리 172-4답	중로3-4 여량리 141-121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130	소로 1-1 여량리 175-2답	소로 2-5 여량리 212-1철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83.4.28)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54	소로 2-6 여량리 149-9전	소로 3-7 여량리 157-3전	일반 도로	-	강고제43호 (78.2.28)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119	소로 2-6 여량리 149-97전	여량리 158-13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27	소로 2-13 여량리 170-3답	소로 2-13 여량리 167-4대	일반 도로	-	강고22호 (97.2.6)	

□ 북평면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	3,184	남측구역계 북평리 822-6도	북측구역계 북평리 598천	일반 도로	북평초교	강고제67호 (86.6.7)	
변경	중로	1	2	12~20	보조 간선	3,184	남측구역계 북평리 822-6철	북측구역계 북평리 598천	일반 도로	북평초교	강고제67호 (86.6.7)	
폐지	중로	2	5	15	보조 간선	208	중로 1-1 북평리 710-4대	중로2-1 북평리 696-24답	일반 도로	정선경찰 북평지소	강고제67호 (86.6.7)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557	중로 2-2 북평리 655-2전	중로 2-6 북평리 797-1답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54	중로 2-2 북평리 655-12전	소로2-2 북평리 618-5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1,327	중로 1-2 북평리 62-1답	북측구역계 북평리 산136-1임	일반 도로	암추센터	강고제67호 (86.6.7)	
변경	중로	3	4	6~12	보조 간선	1,327	중로 1-2 북평리 62-4도	북측구역계 북평리 3도1임	일반 도로	암추센터	강고제67호 (86.6.7)	
폐지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24	중로 1-2 북평리 63-12임	북평리 산188임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95.7.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721	중로 1-2 장열리 43-2도	소로 3-18 장열리 365구	일반 도로	장열대교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1	1	6.5~10	집산 도로	721	중로 1-2 장열리 43-2도	장열리 365구	일반 도로	장열대교	강고제67호 (86.6.7)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775	중로 1-1 북평리 135-2답	중로 2-4 북평리 686-4답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1	2	10	집산 도로	368	북평리 224-1철	중로 2-4 북평리 686-4답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기정	소로	1	7	10	보조 간선	2,525	중로1-2 북평리 822-16전	중로1-2 북평리 64-1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1	7	10	보조 간선	1,876	중로1-2 북평리 822-16전	중로1-2 북평리 149-33제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1	중로 3-4 북평리 328-14대	소로 3-1 북평리 322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40	중로 3-4 북평리 328-14전	북평리 325-6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672	중로 1-2 북평리 31-1전	중로 2-7 북평리 329-1전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95.7.4)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4	중로 3-2 북평리 246-6도	소로 1-2 북평리 245-8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4	중로 3-2 북평리 246-6도	소로 1-2 북평리 245-8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470	중로 1-2 북평리 산189-6입	중로 1-1 북평리 117답	일반 도로	-	정선고제42호 (03.5.9)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470	중로 1-2 북평리 산189-6입	북평리242-21철	일반 도로	-	정선고제42호 (03.5.9)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324	중로 2-2 북평리 704-1입	중로 3-1 북평리 192-7대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연장축소 및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20	중로 2-2 북평리 704-1입	북평리 704-12입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신설	소로	2	30	8	국지 도로	145	소로2-17 북평리 702-19전	중로 3-1 북평리 192-17대	일반 도로	-	금회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47	중로 2-1 북평리 761-1전	중로 3-3 북평리 619-11도	일반 도로	-	강고67호 (86.6.7)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07	중로 2-1 북평리 761-12도	중로 3-3 북평리 618-5도	일반 도로	-	강고67호 (86.6.7)	
폐지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 북평리 755-2전	중로 3-3 북평리 651-1답	일반 도로	-	강고67호 (86.6.7)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280	중로 2-1 북평리 761-9전	중로 1-1 북평리 734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2	24	8	국지 도로	232	중로 2-1 북평리 758-1도	중로 1-1 북평리 740-2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118	중로 2-2 북평리 705-1도	중로 2-5 북평리 242-1구	일반 도로	-	정선고제42호 (03.5.9)	
변경	소로	2	26	8	국지 도로	192	중로 2-2 북평리 705-1도	중로 2-5 북평리 186-6도	일반 도로	-	정선고제42호 (03.5.9)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350	중로 2-2 북평리 704-11입	중로 2-1 북평리 779-2대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2	27	6~8	국지 도로	246	중로 2-2 북평리 704-11입	중로 2-1 북평리 740-2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148	소로 3-7 북평리 150전	소로 3-2 북평리 357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27	중로 3-5 북평리 63-31입	소로 1-6 북평리 63-38입	일반 도로	-	강고제63호 (95.7.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58	소로 1-6 장열리 417-2도	소로 3-18 장열리 434대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35	중로 3-5 북평리 산188임	북평취수장 북평리 298전	일반 도로	북평 취수장	정선고 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367	중로 1-2 북평리 63-54임	북평취수장 북평리 298전	일반 도로	북평 취수장	정선고 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990	소로1-1 장열리 283-1임	북평취수장 장열리 185-2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3	22	4~6	국지 도로	990	소로1-1 장열리 283-1임	북평취수장 장열리 185-2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420	소로 1-6 장열리 366도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변경	소로	3	23	6.5	국지 도로	420	소로 1-1 장열리 366도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강고제67호 (86.6.7)	

□ 임계면 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1	15	보조간 선도로	1,747	중로 1-1 송계리 786-3도	중로 1-1 송계리 253-10도	일반 도로	임계면 사무소	강고제112호 (87.9.9)	중로1-1합 병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2,662	서측구역계 송계리 산177-3천	북측구역계 송계리 238-1천	일반 도로	임계 대교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중로	1	1	15~20	주간선 도로	2,696	서측구역계 송계리 803-17천	동측구역계 송계리 240-1도	일반 도로	임계면 사무소	강고제112호 (87.9.9)	중로2-1합 병
폐지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296	중로 1-1 송계리 657-3도	북측구역계 송계리 산 105임	일반 도로	한국전력 공사	강고제112호 (87.9.9)	중로2-2 합병
기정	중로	2	2	15~20	주간선 도로	1,196	중로 1-1 송계리 657-3도	남측구역계 봉산리 243-2도	일반 도로	임계버스 터미널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중로	2	2	15~20	보조간 선도로	1,512	북측구역계 송계리105-1도	남측구역계 봉산리 243-2도	일반 도로	임계버스 터미널	강고제112호 (87.9.9)	대로3-1 합병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 선도로	495	중로 1-1 송계리 744전	중로 2-5 송계리 689-1답	일반 도로	임계 중앙교회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중로	2	3	15	보조간 선도로	382	소로3-1 송계리 740-7도	중로 2-5 송계리 688-2도	일반 도로	임계 중앙교회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 선도로	548	중로 1-1 송계리 667전	중로 2-1 송계리 949도	일반 도로	농민 문화센터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중로	2	5	15	보조간 선도로	412	소로2-13 송계리 669-1도	중로1-1 송계리 949-2도	일반 도로	농민 문화센터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66	중로 2-2 봉산리 산 942임	소로 1-4 봉산리 234전	일반 도로	준공업지 역내	강고제97호 (90.1.19)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66	중로 2-2 봉산리 산 942임	소로 1-4 봉산리 234전	일반 도로	준공업지 역내	강고제97호 (90.1.19)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8	중로 2-1 송계리 750-7대	중로 2-3 송계리 579-66구	일반 도로	골말천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2	1	4~8	국지 도로	238	중로1-1 송계리 750-7도	중로 2-3 송계리 579-66도	일반 도로	골말천	강고제112호 (87.9.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96	중로 2-3 송계리 806전	소로 2-1 송계리 740-2입	일반 도로	임계 초등학교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90	송계리 740-7도	소로 2-1 송계리 740-5천	일반 도로	임계 초등학교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13	소로 2-4 송계리 579-66도	소로 2-6 송계리 630-1전	일반 도로	골말천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110	소로3-15 송계리 579-35구	송계리 633-11전	일반 도로	골말천	강고제112호 (87.9.9)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338	중로 2-2 송계리 657-35대	중로 2-3 송계리 745-1전	일반 도로	3호 완충녹지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21	중로 2-3 송계리 732-3대	소로 2-14 송계리 656-1전	일반 도로	임계 어린이집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04	중로 2-3 송계리 732-9도	소로 2-13 송계리 733-26도	일반 도로	임계 어린이집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44	중로 2-2 송계리 733-1대	중로 2-5 송계리 670-1답	일반 도로	임계 교회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44	중로 2-2 송계리 733-1전	중로 2-5 송계리 671-1도	일반 도로	임계 교회	강고제112호 (87.9.9)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42	중로 2-2 송계리 657-38전	중로 2-5 송계리 667전	일반 도로	4호 완충녹지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95	중로 2-2 봉산리 241-77	중로 2-2 봉산리 240-10전	일반 도로	-	강고제7호 (90.1.19)	
변경	소로	2	15	5~8	국지 도로	295	중로 2-2 봉산리 241-77입	중로 2-2 봉산리 240-40전	일반 도로	-	강고제7호 (90.1.19)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34	중로 2-2 송계리 640-25대	소로 2-4 송계리 634전	일반 도로	임계토건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37	중로 2-2 송계리 644-4도	소로 3-15 송계리 634-1도	일반 도로	임계토건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19	중로 2-3 송계리 579-35구	소로 2-6 송계리 624-1입	일반 도로	임계 대장간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221	중로 2-3 송계리 579-35구	소로3-5 송계리 624-19천	일반 도로	임계 대장간	강고제112호 (87.9.9)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3	소로 2-6 송계리 624-1입	북측구역계 송계리 579-1구	일반 도로	5호 완충녹지	강고제101호 (03.4.28)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3	소로 3-4 송계리 624-19천	북측구역계 송계리 579-1구	일반 도로	5호 완충녹지	강고제101호 (03.4.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05	소로 2-6 송계리 579-1구	북측구역계 송계리 602전	일반 도로	5호 완충녹지	강고제101호 (03.4.28)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305	소로 3-15 송계리 579-1구	북측구역계 송계리 602전	일반 도로	5호 완충녹지	강고제101호 (03.4.28)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14	중로 1-1 송계리 249-7도	임계배수지 송계리 산92-1입	일반 도로	-	강고 제228호 (10.07.23.)	
변경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79	중로 1-1 송계리 253-16도	임계배수지 송계리 산92-1입	일반 도로	-	강고 제228호 (10.07.23.)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20	중로 2-3 송계리 579-66구	소로 2-6 송계리 638입	일반 도로	-	강고제112호 (87.9.9)	
변경	소로	3	15	5	국지 도로	224	중로 2-3 송계리 579-66구	소로 3-6 송계리 638입	일반 도로	-	강고제112호 (87.9.9)	

## □ 화암 취락지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 로	84	소로2-7 (434-1답)	소로2-7 (432-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 로	91	소로2-1 (433답)	소로1-2 (402-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 로	120	소로1-1 (425-1도)	소로1-2 (396-6구)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2	7	8	집산도 로	464	소로1-2 (402-2도)	소로1-2 (398-1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 로	200	소로1-2 (402-3전)	소로3-1 (411-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 로	199	소로1-1 (350-3도)	소로1-2 (1110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 로	99	소로1-1 (1154-1도)	소로3-10 (38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 로	48	소로3-1 (413-4도)	39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13	4	국지도 로	51	소로3-6 (352-4종)	소로3-12 (374-1대)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15	4	국지도 로	75	소로3-17 (370대)	소로3-16 (324-1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16	4	국지도 로	113	소로2-10 (361-33대)	소로3-17 (370대)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18	4	국지도 로	54	소로1-1 (357-4대)	소로2-10 (356-8차)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폐지	소로	3	19	4	국지도 로	49	소로1-1 (355-1대)	소로3-6 (352-4종)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실효

[붙임 2]

정선군 군계획시설[(도로(예정도로 포함)) 실효에 따른 안내문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미적용 되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평소 통행하던 도로에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하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관계에 유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에 따라 건축허가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허가자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등을 통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381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

- 1. 정선군 고시 제2019-1225호(2019. 11. 20)로 최초 결정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사업
- 2) 명 칭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 적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중로 3-A	L=400m, B=12~15m	-	L=400m, B=12~15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성암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양순모
- 2)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39, 1층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3. 27.~2020. 4. 10.)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임	32,773	5,207	충북충주시 사직로39 1층	성암산업개발 주식회사	-	-	-	중로3-A
계		1필지		32,773	5,207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임	32,773	5,207	충북충주시 사직로39 1층	성암산업개발 주식회사	-	-	-	중로3-A
계		1필지		32,773	5,207						

정선군 공고 제2020-38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도시지역 일원
- 3. 규 모 : 변경 - 14개소 (도로 8개소, 공원 2개소, 녹지 4개소)  
폐지 - 20개소 (도로 2개소, 공원 7개소, 녹지 11개소)
-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결정(변경)(안)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고한읍사무소, 신동읍사무소  
(※ 금회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의 읍·면사무소만 재공람)
-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3. 31. ~ 2020. 4. 16.)
-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재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389호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주민 공청회 개최 안내 공고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정 선 군 수

1. 개최목적 :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년 4월 17일(금) 14:00 ~ 16:00

나. 장 소 : 정선군청 대회의실(별관 2층)

3. 군기본계획(안) 개요

가. 기준년도 : 2015년

나. 목표년도 : 2035년

다. 계획범위 : 1,219.72km<sup>2</sup>(정선군 행정구역 전역)

라. 계획인구 : 46,000명(변경)

마. 계획내용 : 지역특성분석,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 계획수립의 변경 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및 개최 후 14일 이내에 서면, 우편, 팩스(033-560-2596)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나. 제출처 : (우26131)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정선군 공고 제2020-396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정선군공고 제2019-605호(2019.05.30)로 재공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 협의의견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2.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계획관리지역 19,772㎡ ⇨ 31,859㎡(증 12,087㎡)
    - 보전관리지역 467㎡ ⇨ 467㎡(변경 없음)
    - 농림지역 12,087㎡ ⇨ - ㎡(감 12,087㎡)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변경 없음
    -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32,326㎡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변경 없음
    -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세부내용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남면사무소
-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 4. 03 ~ 2019. 4. 20일 까지)
-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도시과, 남면사무소에 서면제출
- 6.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398호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통일된 조례개정으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용허가 기간을 3년 ⇒ 5년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사용기간 조문 일부 정비(안 제13조제1항)
- 사용·수익허가 및 갱신 조문 정비(안 제13조제2항및제3항)
- 준용 조문 추가(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6. ~ 4. 16. (21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64),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으로” 을 각각 “5년이내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일부개정” “군수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며 같은법 제13조제3항 신설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각각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p> <p>① 사용허가 기간은 <u>3년</u>으로 하 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 여야 한다.</p> <p>② <u>사용료는 사용개시일부터 기 산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 는 사용개시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u></p> <p>③ (신설)</p>	<p>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p> <p>① ----- <u>5년</u>이내----- ----- --</p> <p>② <u>군수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 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 <u>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회로 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u></p>
<p>제14조(준용) 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14조(준용) ----- ----- ----- 「지방재정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 례」-----</p>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5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

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제15794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404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부내륙권개발사업에 병방산 군립공원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기존 시설 외에 짚라인 등 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 완료 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 시설 및 추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립공원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 나. 군립공원내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별표1)
- 다. 군립공원내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2)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0. 3. 26 ~ 2020. 4. 9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311),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2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용자 10퍼센트
2. 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0퍼센트.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0퍼센트
4.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30퍼센트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설의 종류
병방산 군립공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굴암리	1. 짚-와이어 시설 ○ 짚-와이어 탑승 및 하강장 ○ 스카이라운지 ○ 광장 및 주차장 2. 스카이워크 시설 ○ 전망시설 ○ 매표 및 관리소 ○ 주차장 ○ 화장실 3. 짚라인 시설 ○ 짚라인 탑승 및 하강장 4. 짚코스터 시설 5. 어드벤처 시설 6. 야영장 ○ 글램핑 시설 (13개) ○ 주차장 ○ 화장실 ○ 세면장 ○ 조리시설 7. 기타 편의시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12조의2 관련)

1. 자연체험시설

가. 시설별 이용요금

(단위: 원)

시설명칭	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개별이용	2,000	35,000	10,000	13,000	10,000
글램핑숙박시	무료	28,000	8,000	10,000	8,000

- ※ 청소년(어린이 포함)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1,000원
- ※ 짚와이어 이용자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무료

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올패키지	짚패키지	비 고
글램핑숙박자	46,000	41,000	
글램핑비숙박자	51,000	46,000	

- ※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2. 야영장

가. 이용요금

(단위 : 원)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 고
글램핑	대형	90,000	120,000	※ 성수기 : 매년 5월~10월
	소형	80,000	110,000	

나. 주의사항

- 1) 시설사용 기준(1일)
  -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u>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①<u>단체 20인 이상은 10% 감면한다.</u></p> <p>②<u>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u></p> <p>③<u>65세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퍼센트 감면한다.</u></p>	<p>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u>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단체(2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용자 10퍼센트</u></li> <li>2. <u>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0퍼센트.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u></li> <li>3. <u>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0퍼센트</u></li> <li>4.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30퍼센트</u></li> </ol>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416호

정선군 공영버스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정선군 공영버스 내·외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 1. 행정예고 내용 : 공영버스 내·외부 CCTV 설치
- 2. 설치목적 :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사고예방 등
-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마.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4. CCTV 설치내용
  - 가. 설치수량 : 차량별 5개 1세트
  - 나. 설치위치 : 공영버스 25대 내·외부
- 5. 행정예고
  - 가. 공고기간: 2020. 3. 30. ~ 2020. 4. 20. (22일간)
  - 나. 공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 20 .까지

나. 제 출 처 : 정선군 안전과 버스공영제 T/F팀

1)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안전과)

2) FAX: 033-560-2174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 팩스 등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별첨)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 안전과(033-560-251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설치위치도(예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설치위치도(예시)





정선군 공고 제2020-426호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19년에는 9월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34농가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에 4백95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입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4개과 129명으로 자연재난 및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였으며,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2016~2017 일체정비를 거친 후, 마을경보수신기, 수위관측시설 등을 보완하여 총 8종 1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22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재난안전관리 의식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등 12회에 걸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군

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에 대한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3회, 안전정책실 무조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신속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감염병 등 주요 재난별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5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총 386억2백만 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로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웬스 등 4종의 환경 방재물자와 호우피해 등에 대비하여 마대 등 7종 27,500점의 수방자재를,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및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 39개소에 217개의 병상과 의사 32명, 간호사 100명의 응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주민 20,014명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60개소의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는 사다리차와 구조공작차, 배연차 그리고 드론 1기를, 응급복구 장비는 덤프, 굴삭기 등 319대, 산불진화헬기 1대 임차배치 및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 2,082점(대)의 진화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재난복구 및 대응관련 인력(기능)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62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등 특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6,546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시설 108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1개소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난관리 기금적립액은 4억5백만원으로 법정기준액의 111%를 확보하였으며,

- 2019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23억2천9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5년간 총 1억7천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위하여 일상적 경비 및 도기금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여 기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2등급으로 지난해(2등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 장치로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돕는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 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구조적인 재난대응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정선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단위 : 건 / 천원)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 해 내 용	복 구 내 용	추진 사항
19.9.6~9.8	태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34 / 4,950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34 / 1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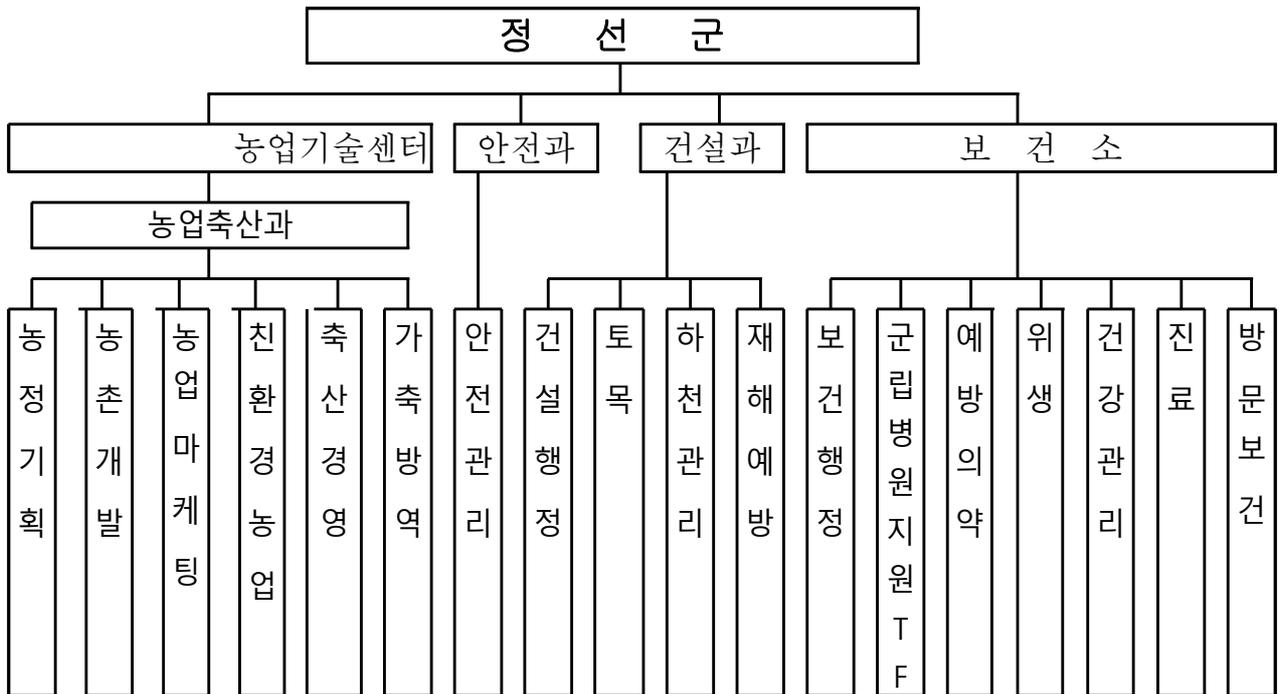
☞ 피해발생 증감원인

- 9월 13호 태풍 링링 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년 대비 피해규모는 감소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조직의 구성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포함)

## ○ 정원

(단위 : 명)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32	130	0	5	31	41	36	17	2
	현원	129	127	0	4	53	30	25	14	3
농업 축산과	정원	24	22	-	1	8	7	3	3	2
	현원	24	22	-	1	9	6	2	4	2
안전과	정원	17	17	-	1	4	5	5	2	-
	현원	19	19	-	1	5	5	4	4	-
건설과	정원	19	19	-	1	6	5	4	3	-
	현원	19	19	-	1	5	6	2	4	1
보건소	정원	72	72	-	2	13	24	24	9	-
	현원	67	67	-	1	34	13	17	2	-

##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4	109	115	142	132
일반직(현원)	102	102	110	116	129
기 타(현원)	2	7	5	26	3

##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 작년도 자료에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통합 내용 반영하였으나, 2019년도 농업축산과 정원 정보만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도모

##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마을경보방송수신기	51	정선읍 가수리외 50개소
강수량관측장비	11	정선군청외 10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3	정선2교외 12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0	역전배수펌프장외 29개소
재해문자전광판	4	임계면사무소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적설계	9	임계면 백복령외 8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97	100	101	101	131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7	37	37	37	51
자동우량관측장비	11	11	11	11	11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6	7	7	1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8	20	20	20	30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2	12	12	12
적설계	9	9	9	9	9
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1

##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증감원인

-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와 마을정보방송 수신기 및 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 시스템을 추가하였음.

##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가)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 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제1기 재난안전체험과정	4.3~4.5	강원도 인재개발원	3	
재난안전관리자과정	4.24	한국재난안전기술원	1	
가축질병과정	5.8~5.1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제2기 재난안전체험과정	6.12~6.14	강원도 인재개발원	8	
재난안전이해과정	6.17~6.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재난안전관리자과정	6.19	한국재난안전기술원	1	
부단체장 전문교육과정	6.1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관리자과정	6.20~6.21	한국재난안전기술원	1	
공군 항공안전단	10.16~10.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제3기 재난대응과정	10.21~10.2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4기 미래재난과정	10.21~10.2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대응사례과정	11.11~11.1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7	
기후재난대응과정	11.25~11.2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9. 3. 11. ~ 3. 12.	속초시 한화콘도리조트	2	2019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	
'19. 4. 3.	안동 그랜드호텔	4	2019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	행정안전부	
'19. 4. 16.	춘천 스카이컨벤션	3	2019년 안전다짐대회 및 안전분야 민관합동 워크숍	강원도	
'19. 6. 11.	철원군 실내체육관	15	2019년 강원도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전진대회	강원도	
'19. 8. 22.	정선군청	9	자율방재단장 자연재난 대비 교육	정선군	
'19. 10. 31.	정선군 종합경기장	2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참석(장비·인력)지원	정선군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심폐소생술 교육	'19.4.19	북평 나전역 일원	35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정선군 정선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19.6.04	정선소방서	57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정선군 정선소방서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 1차	'19.6.27	양구군청	5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 교육	강원도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 2차	'19.11.22	횡성문화원	6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 교육	강원도	
수난구조 스킨스쿠버교육	'19.7.13~ 14	강원대 스포츠센터	28	수난구조대 스킨스쿠버 교육	정선군	
도민 안전체험교육	'19.11.16	태백 365 세이프타운	27	지진 시뮬레이션 및 트리트랙 체험	강원도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7	303	359	312	226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교육	51	29	141	72	33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29	31	33	35	35
지역주민 교육·훈련	37	234	185	205	158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군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자율방재단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은 소폭 감소하고, 지역주민 교육 인원은 소폭 증가하였음.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9. 6. 27.	양구	5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1차)	강원도	
'19. 11. 22	횡성	6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2차)	강원도	
'19. 11. 16.	태백	27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원도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제보실적	처리실적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23	-	-	-	-	-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설명절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기」 홍보	1.31	정선아리랑시장	44	
2	"	「2019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20	사북시장	9	
3	"	건조기 대비 봄철 산불예방 홍보	3.20	정선아리랑시장	64	
4	"	「안전신문고 앱설치」 홍보	4.19	북평면 나전역	35	
5	"	봄철 안전 산행문화 확산 및 산불예방 합동캠페인 전개	5.24	가리왕산 등산로 입구(매표소)	30	
6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6.04	정선읍 범바위 일원	57	
7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7.31	아우라지 일원	35	
8	"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8.02	정선아리랑시장	30	
9	"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9.27.	민동산 일원	25	
10	"	다중이용시설 화재산불 대응 현장훈련	10.31	정선종합경기장	25	
11	"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11.22	정선아리랑시장	25	
12	"	안전한 남면만들기 합동캠페인	12.25	남면행정복지센터	30	

○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	정선군, 군민안전 지킴이 방법 CCTV 점검	1.28	프레시안	
2	정선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1.31	참뉴스	

3	정선군, 안전한 정선만들기 의용소방대장 소통의 시간 마련	3.07	중부뉴스통신	
4	강원도·정선군, '국가안전 대진단' 합동 현장점검	3.20	프레시안	
5	정선군, 군민 생활 안전 강화	5.15	참뉴스	
6	정선 전 군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5.16	MBC강원영동	
7	정선군, 안전한 정선 만들기 주민 공청회 개최	6.28	프레시안	
8	정선군, 정선소방서 생활안전구조 위한 장비 지원	7.05	FPN	
9	정선군,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7.09	프레시안	
10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7.15	프레시안	
11	정선군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	7.16	강원도민일보	
12	정선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7.29	프레시안	
13	정선군, 버스·택시 승강장 에어컨 '호응'	8.04	프레시안	
14	정선군,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9.02	프레시안	
15	정선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10.14	프레시안	
16	정선군민 안전보험금 올해 4명 3천600만원 혜택	10.23	연합뉴스	
17	정선군, 보편적 안전복지 제공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	10.23	뉴시스	
18	정선군, 안전한 재난없는 정선만들기에 총력	10.29	강원신문	
19	정선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0.31	강원도민일보	
20	정선군, 안전 방법 CCTV 31대 추가 설치	11.22	MBC강원영동	
21	정선군, ASF 대응 멧돼지 수렵단 안전관리 교육	11.28	뉴스후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3	3	17	18	21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 증가원인

-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전체 언론보도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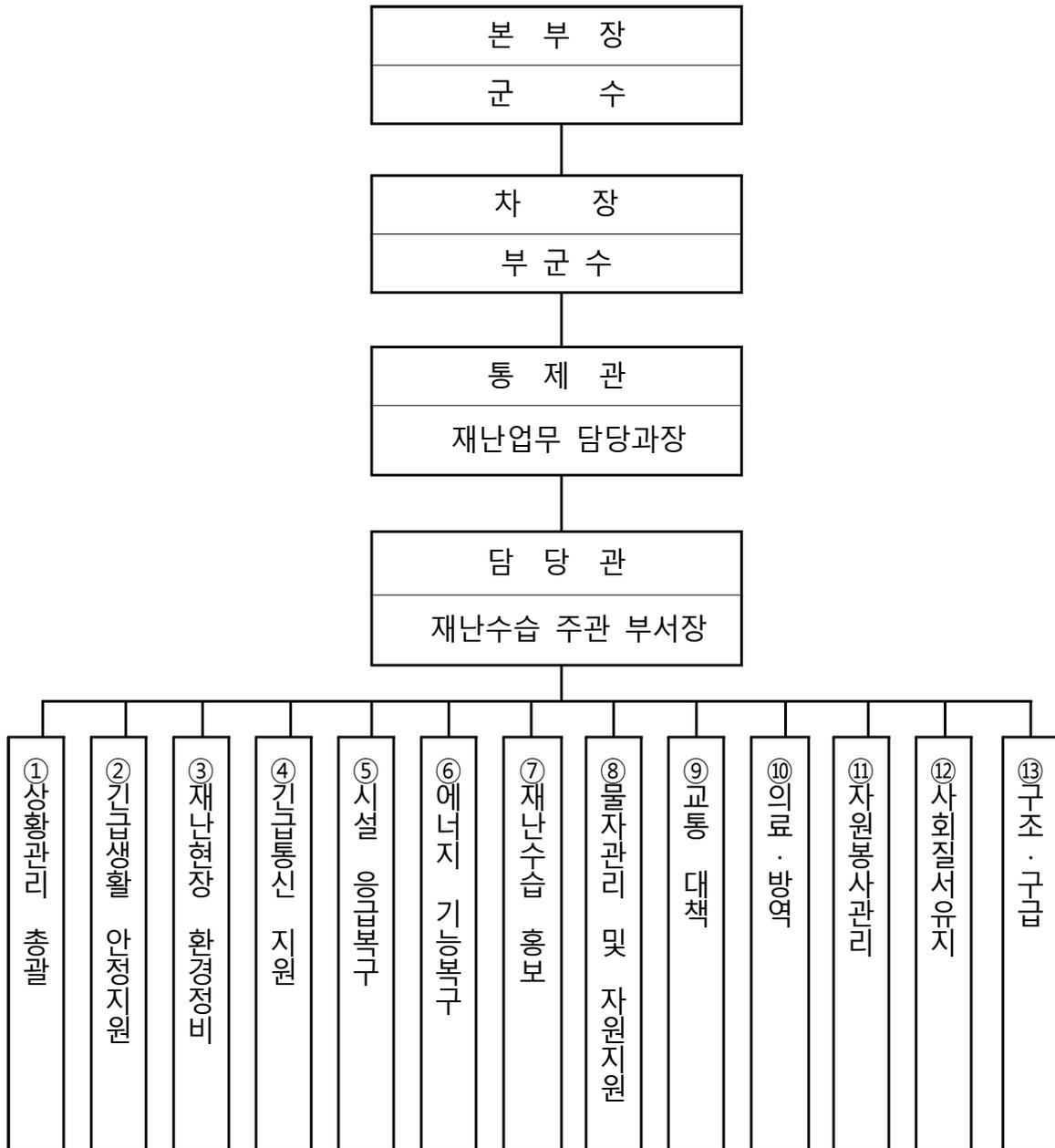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①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군수</li> <li>• 위원 : 1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li> <li>•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및 조정</li> <li>•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li> </ul>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 11조 제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군수</li> <li>• 위원 : 1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검토</li> <li>• 재난관련기관 협조사항 처리</li> <li>• 안전대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도모</li> </ul>
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및 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 조치 및 지휘</li> <li>•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li> <li>•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및 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군수→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및 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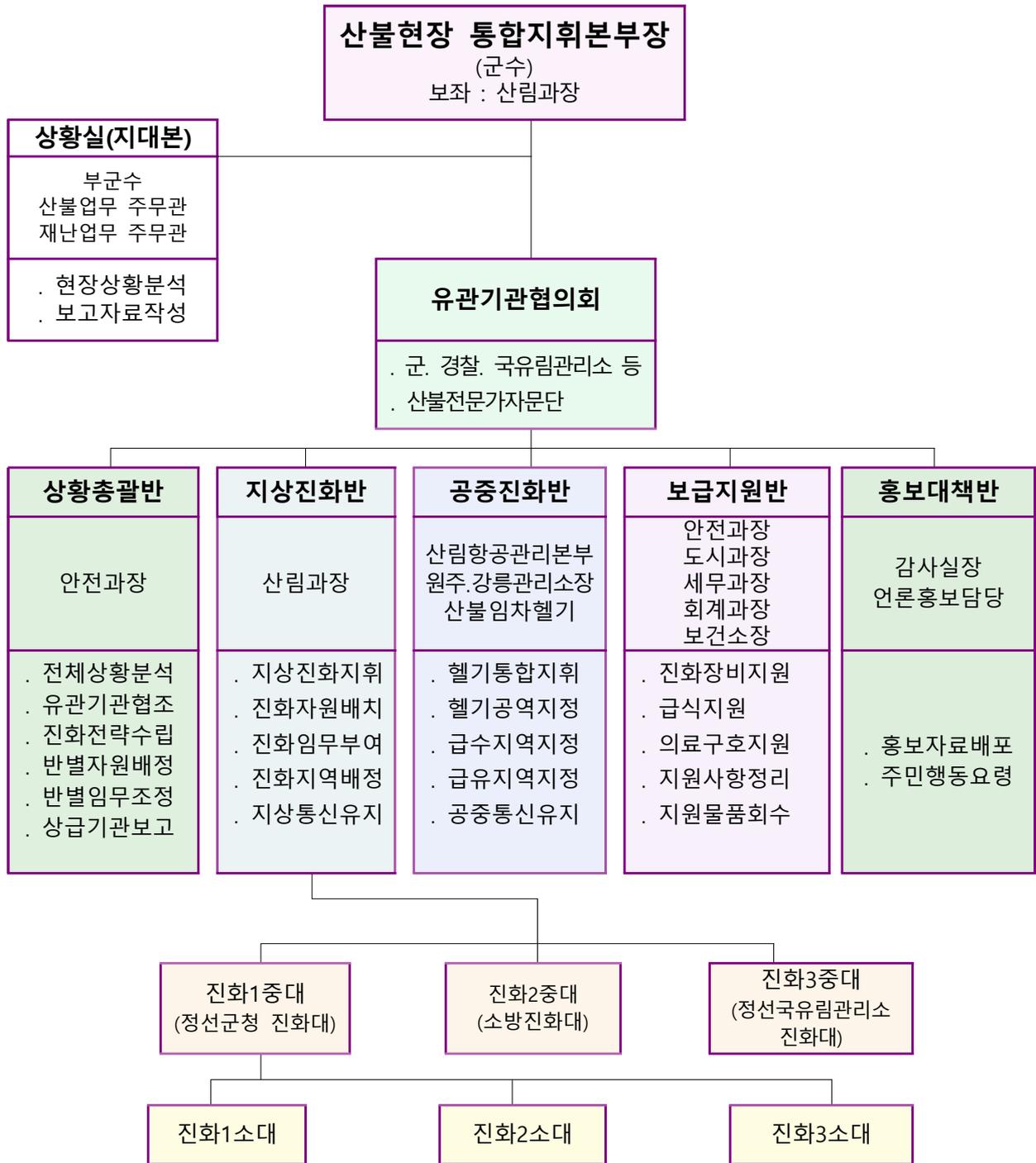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행정과)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기획실)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유지(안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 교통수단 지원(도시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행정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행정과, 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안전과, 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②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 진화중대는 - 3개소대를 기준으로 편제(100명 내외)
- 진화소대는 - 3개진화조로 편제(30명 내외)
- 진화조는 - 10명 내외의 진화대원으로 편제
- 소방은 기존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원대기소 등 별도 설치 운영
- ※ 위 편제기준에 의거 상황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제, 진화 인력 확보

○ 정선군 감염병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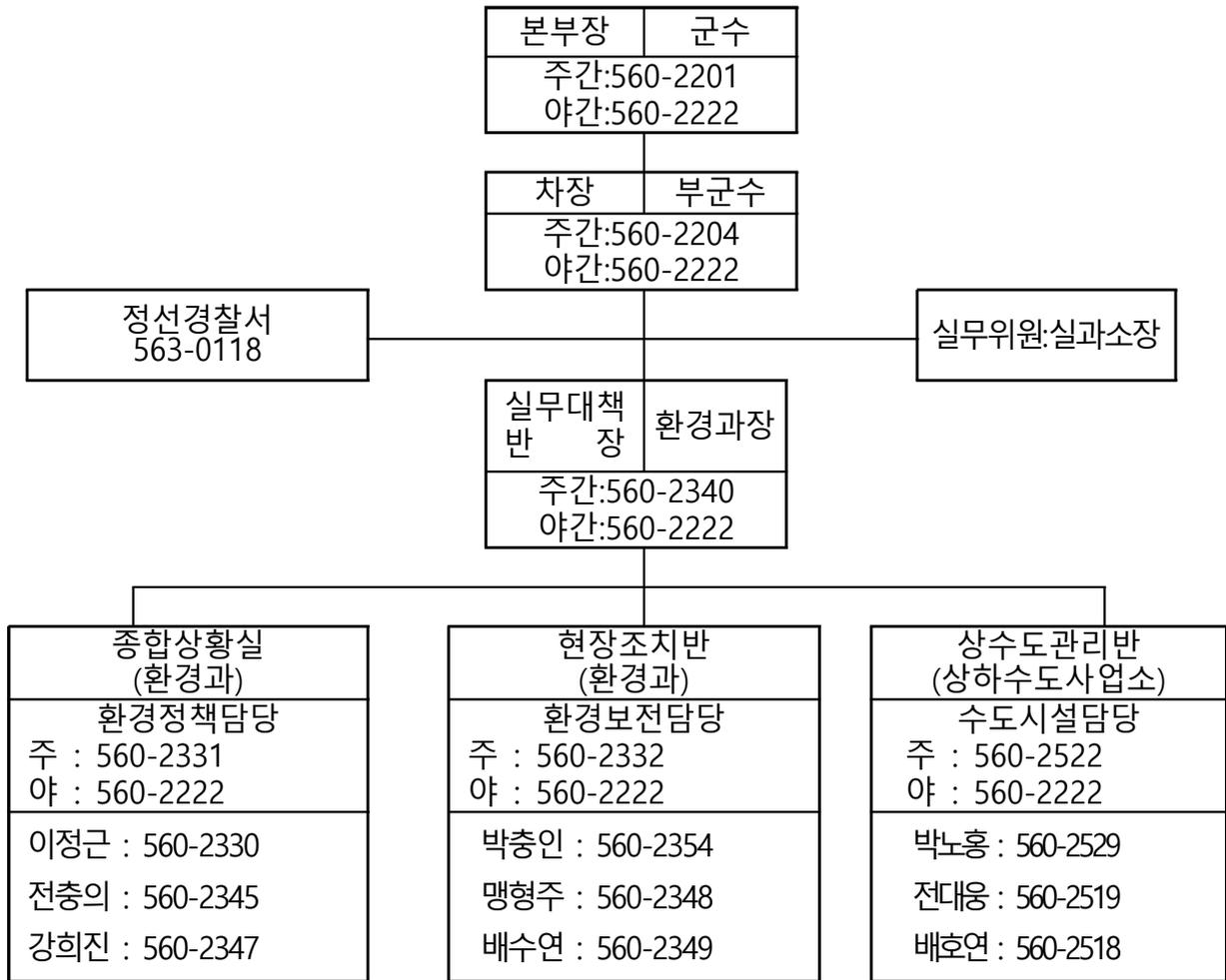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팀별 임무 및 역할

구성	임무 및 역할	관련부서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대책수립 및 질병관리본부, 강원도와 업무협조</li> <li>○ 환자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관리</li> <li>○ 환자이송 및 검체 수송</li> <li>○ 지역내 격리병원 지정 및 격리시설 관리</li> <li>○ 지역내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li> <li>○ 질병정보 및 예방관리수칙 홍보</li> <li>○ 개인보호장비(N-95마스크, 보호복, 장갑, 고글등) 수급 관리</li> </ul>	감염병관리
역학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li> <li>○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li> <li>○ 퇴원환자관리</li> </ul>	위 생
방역소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감염지역 소독 (환자집, 환자이동구간, 구급차량, 보건소 등)</li> </ul>	예방의약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인력지원 (구급차, 운전원)관련 행정업무</li> <li>○ 방역물품구입 및 격리환자 관리물품 지원</li> <li>○ 예산지원 및 집행</li> </ul>	보건행정
소내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진료소운영</li> <li>○ 정신건강상담 지원</li> <li>○ 기타지원사항(인력, 접촉자 추적관리 등)</li> </ul>	건강생활

○ 수질오염사고 대책반 구성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 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560-2601	560-2611	560-2621	560-2631	560-2641	560-2651	560-2661	560-2671	560-2681

덕 정 수 장	송 정 수 장	고한(사북) 정 수 장	납돌(조동) 정 수 장	증 산 정 수 장	화암(회동) 정 수 장	여량(북평) 정 수 장	임 계 정 수 장
812-4033	812-4033	812-4043	812-4036	812-4044	812-4028	812-4037	812-4041

◇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정수장 총괄관리)  
(사무실 812-4025)

## ③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정선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정선군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정선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명피해 예방	2007.04.17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2.05.30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사전검토 및 저감대책 마련	2013.07.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18.04.16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전보험 운영 규정 마련	2018.10.05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목적
급경사지 정비사업	정선읍	세대2, 봉양2 급경사지 정비	2019년	4,676	급경사지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임계면	월탄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19년	2,986	재해위험지 재해예방
재난예경보시설 운영관리	정선읍 외 8개읍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88개소	2019년	390	재난정보 홍보
배수펌프장 운영	정선읍, 북평면	배수펌프장 8개소 운영관리	2019년	514	침수재해 방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지장천	하천정비 L=2.12km,	2019년	2,990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호안정비 L=2.21km,	2019년	2,716	소하천재해예방
하천,소하천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준설 및 유지관리	2019년	816	하천재해예방
군도 확포장 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군도 정비	2019년	3,690	교통재난 예방
농촌생활 용수개발	정선읍 외3개 읍면	생활용수개발	2019년	407	가뭄예방 및 생활용수공급
농경지 배수로정비	정선읍 외8개 읍면	배수로정비	2019년	1,571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수리시설정비	정선읍 외5개 읍면	수리시설정비	2019년	468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농업기반정비 및 유지보수	정선읍 외4개 읍면	배수로	2019년	287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사방댐시설 및 유지관리	남면 외 3개 읍면	사방댐시설 및 준설 등 유지관리	2019년	749	산림재해예방
하수처리시설 증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외 2개소	처리용량 증설	2019년	8,299	하수처리시설 사고 예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19년	4,488	하수처리시설 사고 예방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정선군 관내 9개 읍·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2019년	400	누수재해예방
하수관로 정비	고한읍, 사북읍, 남면	하수관로 설치	2019년	3,155	누수재해예방 및 하수 처리 안정화

○ 재난방지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2015 ~ 201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7,525	27,584	28,030	34,006	38,602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장기사업의 본공사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확보액 4,596백만원이 증가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방재물자 현황

계	오일웁스 (m)	유흡착제 (BOX)	흡착롤 (BOX)	유처리제 (ℓ)	기타
총계	60	68	6	240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방재물자 종류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17	321	313	314	374
오일웬스(m)	80	70	60	60	60
유흡착제(BOX)	52	66	68	68	68
흡착롤(BOX)	5	5	5	6	6
유처리제(ℓ)	180	180	180	180	240
기 타	보호의 40	보호의 5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 ○ 수방자재 연도별 현황

수방자재 종류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마대(40kg)	29,700	30,050	27,450	27,500	27,190
마대(1,000kg)	1,255	1,380	1,150	1,520	1,730
비닐(PE필름)	450	168	230	206	251
흡수성주머니	1,220	1,840	2,120	2,230	2,180
말목	900	900	900	900	900
묶음줄	304	180	203	216	215
작업공구	593	635	543	827	979

##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방재물자의 수량은 사용 및 보충 구매에 따른 증감이 있고 수방자재의 경우 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목표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외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현황

※조무사제외, 공무원 포함

구분	개소	의사 (명)	간호사 (명)	구급차 (대)	병상수 (개)	영안실 (실)
합 계	39	32	100	4	217	2
병 원	20	14	56	2	217	2
보건소	1	4	23	2	-	-
기타(지소 및진료소)	18	14	21	-	-	-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수용 시설	60	20,014	20	16,880	0	0	35	1,281	0	0	5	1,853

○ 의료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의료시설수		41	41	41	41	39
수용시설	개소	74	74	74	60	60
	수용인원	8,220	30,300	30,300	19,701	20,014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 원인

- 수용시설의 경우, 2018년 개정된 수용면적 기준 적용하여 수용인원산정  
(기존 : 1인당 3.3㎡ → 변경 : 초기·응급기 2.6㎡, 응급복구기 3.6㎡)

(나) 장비 지정 현황

○ 구조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비고
5	2	1	1	-	드론1

○ 복구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덤프 (15톤)	굴삭기 (6종)	그레이더	로우더	소형 덤프	추레라	기타
총계	319	5	35	0	4	14	1	260 엔진펌프32 수중펌프17 기타장비 211

○ 산불진화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 타
2,082	0	1	12	8	2,061

○ 기타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용접기	컴프레샤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기타	비 고
13	1	1	8	2	-	1	-	-

##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조장비	3	4	4	4	5
복구장비	129	256	267	254	319
산불진화장비	1,996	2,046	2,110	2,110	2,081
기타장비	13	13	13	13	13

##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구조장비(배연차)를 보강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는 도내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현장 지원을 위한 장비 지급으로 소폭 감소함

## (다) 인력 지정 현황

## ○ 기술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전산	보건	기타
인원	10	2	3	2	-	-	-	3

## ○ 기능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52	1	1	35	15

##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단위 : 명)

계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자율방 범대	기 타
6,546	273	199	30	54	15	661	5,314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원봉사단체	8,712	7,728	6,106	6,406	6,546

☞ 인력지정 증감원인

- 기술·기능인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원봉사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정선군 인구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19 식중독 예방관리	'19.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2019년 재난관리평가	'19.1월~5월	행정안전부	보통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17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108	1	-	-	1%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내진율	1%	1%	1%	1%	1%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이유

-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대상시설물 15개소의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추진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 성능확보 추진 예정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없음)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해 당 없 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	해	당	없	음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경보시설(개소)					

☞ 정비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해당없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최저적립기준액(①)	적립액(②)	확보율 (②/①×100)
397백만원	440백만원	111%

-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확 보 액		972	1,066	1,445	1,861	2,329
사 용 액	계	171	-	-	-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71	-	-	-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100	-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복구	-	-	-	-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가 원인

- 2019년 재난관리 기금 최저적립액은 397백만원이고 이에 440백만원을 적립하여 111%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2019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2,329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46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9년도의 해당연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증가한 사항임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현황

행동 매뉴얼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설해)	건설과	2006.12.27	풍수해(설해)재난 행동요령
지진	건설과	2006.12.27	지진재난 행동요령
대형화산폭발	안전건설과	2014.3.	대형화산폭발 행동요령
가뭄	건설과	2015.11.12	가뭄재난분야 행동요령
산불	산림과	2006.12.27	산불재난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과	2014.4.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환경과	2014.4.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행동요령
댐붕괴	건설과	2014.9.	댐붕괴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과	2014.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요령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경제과	2016.1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과	2016.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 행동요령
가축질병	농업축산과	2006.12.27	가축질병 행동요령
감염병	보건소	2006.12.27	감염병분야 행동요령
전력	경제과	2016.10	전력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보건의료	보건소	2006.12.27	응급의료분야 행동요령
식용수	상하수도사업소	2007.8.29	식용수분야 행동요령

육상화물운송	도시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가스	경제과	2016.10	가스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문화재사고	문화관광과	2018.1.1	문화재사고 대응 행동요령
산사태	산림과	2018.4.5	산사태 분야 행동요령
한파	건설과	2019.02.27	한파 분야 행동요령
폭염	건설과	2019.4.19	폭염 분야 행동요령

## ○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보건의료 현장조치	2019.4.25	보건의료자원 등 통계 현행화	
가뭄	2019.10.30.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재난관리체계도 수정	
한파	2019.10.30.	재난관리체계도 수정	
폭염	2019.10.30.	재난관리체계도 수정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2019.11.18.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외국인 사상자 통보절차 반영	
전력	2019.12.5	관계기관 주요임무, 재난관리체계도 수정	

## ○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19.10.28	2019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현행화(협업체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2019.5.29	2019 을지태극연습	매뉴얼 현행화 (대응단계별 연락체계)	
전력	2019.7.29	2019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매뉴얼 현행화(협업체계)	

##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뉴얼 수	15	19	19	21	22

☞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파, 폭염 매뉴얼을 추가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34	0.909	0.940	0.447	2

※ (안전) 1등급 < - - - - - > 10등급 (위험)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평가항목			지역 안전도	등급	비고
	위험환경	위험 관리능력	방재성능			
2015년	0.474	0.580	0.830	0.702	8	
2016년	0.458	0.553	0.830	0.702	8	
2017년	0.506	0.553	0.830	0.696	7	
2018년	0.434	0.909	0.940	0.447	2	
2019년	0.434	0.909	0.940	0.447	2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전년도 등급을 유지하며 2019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등급(0.447)을 유지

바.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풍수해보험

(가) 풍수해보험 개요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등)로 인한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 (나)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지원				군비추가 지원	홍보비
		소 계	국비	도비	군비		
2018년	503,813	433,813	367,070	13,349	53,394	50,000	20,000
2019년	206,221	185,610	148,965	7,329	29,316	-	20,611

※ 우리군에서는 일반가입자 주택과, 영농목적의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대한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추가지원 시책 추진

## (다) 가입현황

(단위 : 동, m<sup>2</sup>)

구 분	주택보험 가입현황			온실보험 가입현황			비 고
	대상 가구	가입 건수	비율(%)	대상 면적	가입 면적	비율(%)	
2018년	7,125	931	13.0	620,400	151,606	24.4	
2019년	7,125	813	11.4	633,400	273,290	43.1	

※ 전년대비 가입실적

- 주택 : 87.4% (18년 931건, 19년 813건)
- 온실 : 144.5% (18년 151,606m<sup>2</sup>, 19년 273,290m<sup>2</sup>)

2)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가) 정선군민 안전보험 개요

- 정선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0. 3. 1. ~ 2021. 2. 29.(1년간)
- 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군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T.1644-9666)

(라)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의사상자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

- ※ “후유장해” 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 공시 관련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은 정선군 안전과로  
(담당자 : 황소연, 전화 : 033-560-248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444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군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례(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9조 8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가능
  -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감면하되 감면금액의 합이 월 임대료의 2배 이내

나. 입주자 및 아파트 관리

- 입주자 관리
  - 입주 자격 상실 시 퇴거 기한 및 계약해지 요건 완화(안 제12조)
  - 광산근로자에 대한 우선입주 사항 삭제(안 제5조)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할 수 있게 변경하고 별표2(입주부담금) 삭제(안 제9조)
- 입주자 선정 시 경합 된 때 입주 순위를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에 순위로 변경하고 각호 순위를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및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으로 변경(규칙 안 제3조)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기타 사항

-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정선군에서 매입 또는 건립

한 아파트로 수정(안 제1조, 제3조)

- 임대차계약을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조문을 수정하고 시행규칙 별표1(정선군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삭제(규칙 안 제4조)
-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에 해피아리아파트, 여미솔아파트, 행복주택 추가 (안 별표 1)
- 임대료 징수 조항(별지 제4호서식 포함) 삭제(규칙 안 제5조)
- 기타 오탈자 및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도시과)
- 전 화: 033-560-2477
- 팩 스: 033-560-2596
- 이 메 일: sosimigo@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고보조금으로” 를 “정선군에서”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이 국고보조금으로” 를 “군이” 로, “건설하여 무주택 군민에 임대하여” 를 “건설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놀이터시설” 을 “어린이놀이터 시설” 로, “주택건설” 을 “주택건설기준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입주금(보증금) 월”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에게” 를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할때에” 를 “인정할 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무원복무조 례” 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입주자격 범위)” 를 “(입주자격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주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또는 정선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가발생” 을 “공가 발생” 으로, “일정기간” 을 “일정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발생시” 를 “발생 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하 여야” 를 “통지하여야”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주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주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주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바 에 따라 입주보증금” 을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을 “따른” 으로, “규정 에” 를 “규정에” 로, “입주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입주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납부하 여야” 를 “납부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과되 는” 을 “부과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한내” 를 “기한 내” 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발생 시 군수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의 합계가 월임대료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0조제1항 중 “군수 의” 를 “군수의”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년” 을 “2년” 으로, “연 장” 을 “연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작성하 여야” 를 “재작성하여야”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입주해제 및 퇴거)” 를 “(임대계약해제 및 퇴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위 를” 을 “행위를” 로, “입주해제와” 를 “임대계약해제와”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퇴거일은 입주해제후 30일” 을 “퇴거기한은 임대계약해제 후 3개월”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할때” 를 각각 “할 때” 로, 같은 항 중 “하 여야 하며 이주” 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주” 로 한다.

2. 임대료를 연속하여 3월이상 체납한 때

제14조 중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변경 전

##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정선군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3번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	

## 〈 별표 1〉 변경 후

##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고한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14	
사북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5	
해피아리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3	
여미솔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233	
고한행복주택	강원도 정선군 공한읍 고한 10길 28-24	

〈별표 2〉 삭제

## 입 주 부 담 금

(단위 : 원)

아파트명	평 형 전용/m <sup>2</sup>	입 주 보증금	층별	월임대료	월관리비
사 북 고 한	13평형	1,150,000	1층	37,000	13,000
			2	41,000	
			3	41,000	
			4	38,000	
			5	35,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u>국고보조금으로</u>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정선</u> <u>군에서</u>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아파트"라 함은 <u>군이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군민에 임대하여</u>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p> <p>2. "부대복지시설"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u>어린이놀이터 시설, 판매시설, 비상저수시설, 기타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된 시설</u>을 말한다.</p> <p>3. "징수금"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u>입주금(보증금)</u></p>	<p>제3조(정의) ----- -----.</p> <p>1. ----- <u>군이</u> ----- ----- <u>건립하여</u> -----.</p> <p>2. ----- ----- <u>어린이놀이터</u> <u>시설</u>----- ----- <u>주택건설기준 등</u>----- -----.</p> <p>3. ----- ----- <u>임대보증금,</u> --</p>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또는 연체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4. (생략)

제4조(아파트 관리) ①아파트 관리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할 수 있다.

②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군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하되, 광산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공급 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아파트 관리) ①-----  
-----  
----- . -----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이 -----.

②-----  
----- 인정  
할 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  
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또는 정선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 공가 발생-----  
----- 일정 기간-----  
-----.

제6조(입주자 선정) ①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신청 대기순에 의한다.

②·③ (생략)

④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8조(입주보증금) ①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계약에 정한바에 다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입주자는 아파트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②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

제6조(입주자 선정) ①-----  
-----  
----- 발생시-----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통  
지하여야 ----.

제7조(임대차계약) -----  
-----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  
-----.

제8조(임대보증금) ①-----  
----- 임대차계약-----  
----- 바에 따라 임대보  
보증금-----.

②----- 따른  
-----  
----- 규정에 -----

임대보증금-----  
-.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 임대보증금-----  
----- 납부하여야 ----.

②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는 별표2와 같다.

③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임대료를 규칙이 정하는 지정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략)

<신설>

제10조(입주자 의무등) ①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

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  
----- 부과되는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기한 내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발생 시 군수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의 합계가 월임대료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0조(입주자 의무등) ①-----  
-----  
----- 군수의 -----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임대기간) ①아파트 임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 연장 시 2년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해제 및 퇴거) ①입주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해제와 동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때, 퇴거일은 입주해제후 30일 이내로 한다.

1. (생략)

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월이상 체납할 때

3. (생략)

4.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로서 부적합할 때

②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기간) ①-----  
---- 2년-----  
----- 연장-----.

③-----

재작성하여야 ----.

제12조(임대계약해제 및 퇴거) ①  
-----  
-----  
----- 행위를 -----  
-- 임대계약해제와 -----  
----- 퇴거기한은 임대계약해제 후 3개월 ---.

1. (현행과 같음)

2. 임대료를 연속하여 3월이상 체납한 때

3. (현행과 같음)

4. -----  
----- 할 때

②-----

<p><u>할때</u>에는 퇴거일 30일전까지 해 지신청서를 제출 <u>하 여야 하며</u> <u>이주</u>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p> <p>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u>「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u>, <u>「주택법 시행령」</u>,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 다.</p>	<p><u>할 때</u>----- ----- <u>하 여야 하며, 군수는</u> <u>이주</u>----- -----</p> <p>제14조(준용)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u>「공공주택특별법」</u>----- -----.</p>
---	---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명시한” 으로, “신청한다” 를 “신청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과” 를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 할 때” 를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 로, “선정 한다” 를 “선정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임대보증금

- 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입주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주보증금을 예탁하고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별표1” 을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 기일내” 를 “지정기일 내” 로, “제3조에 의한 순위자를 선정하여 입주계약” 을 “후순위자와 임대계약” 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서식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건물의 표시

건 물 명	동	호	면 적(m <sup>2</sup> )	비 고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정선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조정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갑"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갑"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을"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쌍방의 이의가 없을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경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①"을" 은 본계약 체결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을"이 "갑"에게 예치 하며, 계약 해지후"을" 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갑"은 이를 원금 환불하여야 한다.

③임대료 체납금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때는 "갑"은 "을"의 승인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을"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입주기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는 그달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을"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등의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을"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등 청소, 위생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 수선, 기타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을"(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최고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입주권리의 양도
- 3. 임대료의 2개월이상 체납
-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 5. "을"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 6. "을"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퇴거 하고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약)①"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을"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소송은 최고 없이 "갑"이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준수사항) "을"은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다.
-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갑" "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정 선 군 수

"을" - 주 소 : 정선군 읍면 리 반 번지

성 명 : (인감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		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		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아파트 동 호 20 년 월 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 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공 동 전 기 료	원	공 동 전 기 료	원	공 동 전 기 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미 납 금 액	원	미 납 금 액	원	미 납 금 액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위 금액을 귀은행(지점)에서 수 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 관내 금융 기관 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정선군 관내 금융 기관 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u></p> <p>1. <u>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u></p> <p>2. <u>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u></p> <p>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u>별지 제2호서식과</u>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신청서는 <u>별지 제3호서식에</u> 의한다.</p>	<p>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 ----- ----- <u>입주자 모집</u> <u>공고 시 명시한</u> ----- ----- <u>신청하여야</u> <u>한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② ----- ----- ----- <u>별지</u> <u>제2호서식,</u> ----- ----- -----.</p>
<p>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p>	<p>제3조(입주자 선정) ① ----- ----- ----- ----- ----- -----.</p>

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입주 부담금
- 3.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 한다.

- 1. 광산 근로자 재직경력 세대주
- 2. 무주택 세대주

③ 제2항의 순위에서 경합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 1. 광산 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 2. 국가 유공자 (보훈처 증명)
- 3. 부모 봉양자
- 4. 기타 군수가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4조(입주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보증금을 예탁하고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  
----.

- 1. (현행과 같음)
- 2. 임대보증금
- 3. (현행과 같음)

② -----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 선정한다.

- 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삭제>

제4조(임대차계약) ① -----  
-----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

별표1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순위자를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 표준임대차계약서-----  
-----.

② ----- 지정기일 내 -----  
----- 후순위자와 임대계약-----  
-----.

제5조(임대료 징수)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6. 기간 내 입주 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 2. 재정 및 주택도시시기금 지원비율
  -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 6. 주택도시시기금의 용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 및 관리등을 할 수 있다.
-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내용(제4항의 경우 예

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3호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등 국가적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군민 생활의 위협과 지역 경기 침체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음.
-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3. 예고기간 : 2020. 4. 1~4. 6(5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 발생 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③ 재난기본소득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

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